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평가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상권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2년 7월 25일까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미래산업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22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4항을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의 협의·지원

제13조제5항제36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7월 22일”을 “2023년 7월 22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2년 7월 25일까지
2)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3)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 혁신정책과	6명 (5급 4명, 6급2명)	2022년 9월 30일까지
4)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 혁신지원과	1명 (4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⑩ (생략) ⑪ ~ ⑬ (생략) ⑭ (생략) ⑮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 한 중·장기계획의 수립</u> 16. <u>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 조 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u> 17. <u>중소기업 통합 정보화 경영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u> 18. <u>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u> 19. <u>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u> 20. ~ 27. (생략) <16>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 제11항부터 제1 3항까지와 같음) ⑪ (현행 제14항과 같음) ⑮ ----- -----. 1. ~ 1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15. ~ 22. (현행 제20호부터 제 27호까지와 같음) -----

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2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24. ~ 26. (생략)

27.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의 협의·지원

<17>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⑮ (생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④ (생략)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

-----.

1. ~ 22. (현행과 같음)

<삭제>

23. ~ 25. (현행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삭제>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정책의 협의·지원

⑮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 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5호 부터 제30호까지의 시험·분석 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 ~ 35. (생략) <u><신설></u> 36. (생략) ⑥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미래산업전략팀은 <u>2021년 7월 22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 ----- ----- ----- ----- -----. 1. ~ 35. (현행과 같음) <u>36.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관한 사항</u> <u>37. (현행 제36호와 같음)</u> ⑥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3년 7월 22일</u>-----. ② (현행과 같음)
---	--